###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##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O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#### 3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관광진흥법」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문화 관광해설사 선발방법을 현행화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내용

O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관련 조문 정비(안 제5조)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상위법인 「관광진흥법」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됨.

#### 관광진흥법

- 제48조의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 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  - 안 제5조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를 선발하도록 규정함.
    - 「관광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, 특별한 이견이 없음.